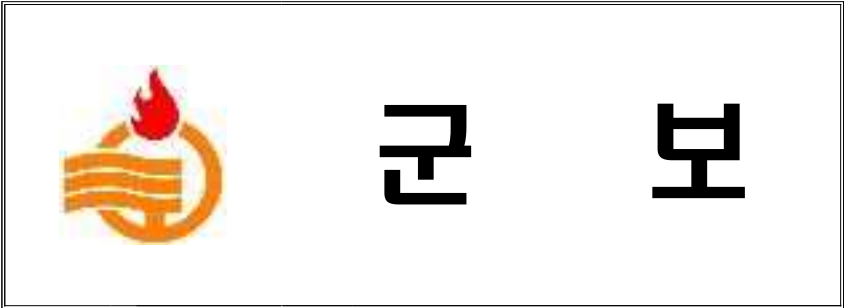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강화군

군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427호

2026년 8월 3일(월)

- 차 례 -

입 법 예 고

제2026-28호	강화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2026-29호	도로의 사용 개시 공고[군도7호선(상도1리마을회관~신촌간)-도로확포장공사]	- 6

공 고

제2026-1172호	수용재결 정본 공시송달 공고(군도7호선 부근삼거리~홍의마을 입구)-	13
제2026-1178호	2026년 7월 취득세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15

입 법 예 고

강화군의회 공고 제2026-28호**강 화 군 리 개 발 위 원 회 조 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입 법 예 고**

「강화군 리개발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03일

강 화 군 의 회 의 장**1. 개정 이유**

리개발위원회 당연직위원 범위에 반장(班長)을 포함하는 방안과
위촉직위원의 위촉을 이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위촉하는 방안과
조례명을 현대적 어감으로 순화하는 방안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의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당연직위원 범위에 반장(班長)을 포함(안 제3조제2항 전단)
- 나. 위촉직위원의 위촉을 이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위촉(안 제3조제2항 후단)
- 다. 조 례 명 을 현 대 적 어 감 으 로 순 화

3. 개정 조례안: 별도 첨부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강화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032-930-3757, 팩스 032-930-3509,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서식

「강화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자	해당 조항	의견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도 사용 가능합니다.

5.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강화군조례 제 호

강화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화군 리개발위원회 조례”를 “강화군 리운영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향토개발”을 “마을발전”으로, “리개발위원회”를 “리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리개발위원회”를 “리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역개발”을 “운영과 발전”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이장”을 “이장, 반장(반이 2개 이상인 리는 호선된 반장 1명)”으로, “읍장·면장”을 “이장의 추천을 받아 읍장·면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읍장·면장은 다음”을 “다음”으로, “위원”을 “이장의 건의로 읍장·면장은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강화군 리개발위원회 조례</u>	<u>강화군 리운영위원회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u>향토개발</u> 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설치되는 <u>리개발위원회</u> 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마을발전</u> ----- ----- <u>리운영위원회</u> ----- ----- --.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u>리개발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 <u>리운영위원회</u> ----- -----.
1. 리 <u>지역개발</u> 에 관한 사항	1. -- <u>운영과 발전</u> -----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생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 위원은 해당 리의 <u>의장</u> ,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u>읍장·면장이 위촉하되</u>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② ----- <u>의장</u> , 반장(반이 2개 이상인 리는 <u>호선된 반장 1명</u>)----- ----- ----- <u>의장의 추천을 받아 읍장·면장</u> ----- -----

고려하여야 한다. <제2항 신설
2021.11.17.>

③ ~ ⑦ (생략)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읍장·
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
다.

1. ~ 6. (생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다음 --

이장의 건의로 읍장·면장은 위
원-----
--.

1. ~ 6. (현행과 같음)

강화군의회 공고 제2026 - 29호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 운영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 운영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03일

강 화 군 의 회 의 장

1. 제정 이유

이 조례는 인공지능(AI) 및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학습멘토링(에듀테크 멘토단)
을 통해 도서·농촌 지역 등 교육격차 취약지역을 포함한 관내 학생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며,

궁극적으로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조	표제	주요내용
제1조	목적	AI·에듀테크 활용 멘토링으로 교육격차 취약지역 포함 관내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 미래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
제2조	정의	에듀테크, 미래인재, 에듀테크 멘토단, 교육격차 취약지역, 학교 등 5개 용어 정의
제3조	책무	군수의 종합시책 마련, 취약지역 우선지원, 매년 접근성 실태조사 의무(①②③ 모두 강행규정)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타 조례에 특별 규정 없는 한 이 조례 적용 (일반법-특별법 관계 정리)
제5조	기본계획 수립	5년 단위 기본계획,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최초계획 수립, 6개 필수 포함사항 규정
제6조	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범위 내 5개 호 사업 예산지원(임의규정), 매년 공고
제7조	멘토단 구성·운영	청년·대학생·은퇴교육자 등으로 멘토단 구성(임의규정), 취약지역 우선배치, 수당·장학금은 규칙 위임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인천시교육청(강화교육지원청)·학교·에듀테크 기업·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 가능
제9조	시상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른 공로자 포상
제10조	시행규칙	멘토단 구성·운영·수당 지급기준 등 규칙 위임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

3. 제정 조례안: 별도 첨부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강화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032-930-3757, 팩스 032-930-3509,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서식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 운영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자	해당 조항	의 건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도 사용 가능합니다.

5.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강화군조례 제 호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 운영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AI) 및 에듀테크(EduTech) 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 멘토단의 학습멘토링을 통해 도서·농촌 지역 등 교육격차 취약지역을 포함한 강화군 관내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미래인재를 양성하며, 교육 혁신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듀테크(EduTech)”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 등을 교육에 융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는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2. “미래인재”란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창의적 문제해결력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에듀테크 멘토단”이란 제7조에 따라 구성되어 학생에 대한 학습멘토링, 디지털기기 활용 지도 및 진로상담 등을 수행하는 인력집단을 말한다.
4. “교육격차 취약지역”이란 도서지역,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 정보통신 인프라 및 교육자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말한다.
5. “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청소년 교육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격차 취약지역에 에듀테크 멘토단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디지털 기기·인프라를 우선 지원하는 등 도서·농촌 지역 등의 지리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교육격차 취약지역의 에듀테크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5조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에듀테크 기반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 혁신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에듀테크 기반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강화군 에듀테크 기반 미래인재 양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 혁신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에듀테크 기반 교육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 방안
3. 연도별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4. 교육청, 학교, 민간 기업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육격차 취약지역 우선지원 계획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 혁신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 콘텐츠 및 플랫폼 이용 지원

2. 디지털 교과서 활용 및 에듀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비·기기 지원

3. 방과 후 학교, 돌봄 취약계층 대상 에듀테크 활용 학습 지도 및 보충 교육 사업

4. 소프트웨어(SW)·코딩, 데이터 리터러시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캠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의 목적, 대상, 선정기준 등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에듀테크 멘토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격차 취약지역을 포함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청년, 대학생, 은퇴 교육자 등으로 구성된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이하 “멘토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멘토단은 학생에 대한 학습멘토링, 디지털기기 활용 지도, 진로상담 및 정보 접근성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③ 군수는 멘토단을 배치하는 경우 교육격차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멘토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 또는 장학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멘토단으로 위촉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위촉이 제한되는 사람은 멘토단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강화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국내 유수의 에듀테크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상) 군수는 에듀테크 기반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 혁신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멘토단의 구성·운영 및 수당 지급기준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1172호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강화군에서 시행하는 군도7호선(부근삼거리~홍의마을입구)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6. 6. 26. 수용 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토지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3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1. 사 업 명: 군도7호선(부근삼거리~홍의마을입구)도로확포장공사
2. 사 업 위 치: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1099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강화군수
4.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강화군청 도로교통과 방문 또는 전화(☎032-930-3471)
5. 공시송달 대상 : 불임참조
6. 공시송달 사유 : 주소불명 등
7.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6. 8. 3. ~ 8. 18.(15일간)
8. 기타

가. 손실보상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없이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 시 청구서 등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

「붙임」

공시 송달 대상자

연번	성 명	송달주소	비고
1	고 * 오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9 * 8	
2	김 * 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상도리 7 * 4	
3	김 * 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로80번길 11, * 05동 * 403호	
4	한 * 천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 8 * 2	한 * 천의 상속인
5	김 * 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로80번길 11, * 05동 * 403호	
6	조 * 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5 * 1-4	

강화군 공고 제2026 - 1178호

공 시 송 달

성 명 : 계*신 외 17인
서 류 의 송 달 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
서 류 의 명 칭 : 2026월 7월 취득세 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 “붙임” 내역과 같음

위의 고지서를 2026년 7월에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고지서가 반송되었기에 납부기한을 **2026년 8월 31일**로 변경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강화군청 세무회계과(☎032-930-33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3일

강 화 군 수

공시송달 내역

(단위: 건, 원)

연번	세목	과세(문서)번호	납세자 번호	납세자명	발송주소	과세물건	반송 사유	본세합계	가산금	합계
18			합계					97,977,540	3,084,840	101,062,380
1	101501 취득세 (부동산)	28710-101501-202 607-2-340-000562	570801- 1*****	계*신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	토지 화도면 내리 ***-*번지 *00.0000m ² 상속(미신고분 직 권과세)	7 기타	1,652,630	37,620	1,690,250
2	101501 취득세 (부동산)	28710-101501-202 607-2-320-000473	761207- 1*****	김*기	인천광역시 계 양구 주부토로 501번길	토지 불은면 삼동암리 *00*-**번지 ***.0000m ² 상속 (미신고분 직권과세)	7 기타	2,187,400	65,600	2,253,000
3	101501 취득세 (부동산)	28710-101501-202 607-2-330-000650	920520- 2*****	김*나	인천광역시 연 수구 랜드마크 로 68	토지 길상면 초지리 ***-**번 지 외 *필지임야 -> 대지 ***.0000m ² 지목변경(미신고분 직권과세)	7 기타	471,620	11,040	482,660
4	101501 취득세 (부동산)	28710-101501-202 607-2-410-000634	630815- 1*****	김*섭	인천광역시 강 화군 삼산면	토지 삼산면 석모리 *0*-*번 지 전 -> 대지 ***.0000m ² 지 목변경(미신고분 직권과세)	7 기타	4,612,640	107,640	4,720,280
5	101501 취득세 (부동산)	28710-101501-202 606-2-360-000384	630801- 1*****	민*모	인천광역시 강 화군 내가면	건물 내가면 고천리 *-**번지 건물 **.0000m ² 신축(미신고 분 직권과세)	7 기타	1,514,630	40,770	1,555,400
6	101501 취득세 (부동산)	28710-101501-202 607-2-390-000577	801105- 1*****	박*도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소평로	토지 송해면 당산리 ***0-*번 지 외 *필지 ****.0000m ² 상속 (미신고분 직권과세)	7 기타	8,244,340	189,210	8,433,550
7	101501 취득세 (부동산)	28710-101501-202 607-2-390-000578	801105- 1*****	박*도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소평로	토지+건물 송해면 당산리 ***-*번지 **0.0000m ² 건물 **.*000m ² 상속(미신고분 직권 과세)	7 기타	2,022,550	46,080	2,068,630
8	101501 취득세 (부동산)	28710-101501-202 605-2-250-000252	890911- 2*****	원*연	인천광역시 검 단구 봉수대로	토지+건물 강화읍 갑곶리 ***-*번지 창대빌라 *동 *동 *0*호 **.*000m ² 건물 **.*00 m ² 상속	7 기타	2,575,110	95,650	2,670,760
9	101501 취득세 (부동산)	28710-101501-202 605-2-310-000272	470908- 2*****	이*녀	인천광역시 강 화군 양도면 중 양로	토지 선원면 선행리 ***-*번 지 답 -> 대지 ***.0000m ² 지 목변경	7 기타	546,810	13,260	560,070

10	101501 취득세 (부동산)	28710-101501-202 607-2-370-000579	731125- 2*****	이*란	인천광역시 강 화군 송해면	토지 하점면 망월리 ***번지 외 *필지 **0*000m ² 상속(미 신고분 직권과세)	7 기타	10,681,500	243,840	10,925,340
11	101501 취득세 (부동산)	28710-101501-202 607-2-370-000580	731125- 2*****	이*란	인천광역시 강 화군 송해면	토지+건물 하점면 망월리 *** 번지 ***.0000m ² 건물 *0.000 m ² 상속(미신고분 직권과세)	7 기타	971,630	22,020	993,650
12	101501 취득세 (부동산)	28710-101501-202 606-2-420-000456	740115- 2*****	이*애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 길	토지 서도면 주문도리 **번지 외 *필지 *0*0.0000m ² 상속 (미신고분 직권과세)	7 기타	700,210	25,590	725,800
13	101501 취득세 (부동산)	28710-101501-202 607-2-380-000543	124411- 0*****	주식회사 *진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토지 양사면 인화리 ***_**번 지 외 *필지임야 -> 대지 ***.0000m ² 지목변경(미신고분 직권과세)	3 수취 인불명	1,751,820	40,830	1,792,650
14	101501 취득세 (부동산)	28710-101501-202 605-2-340-000260	541024- 2*****	최*란	서울특별시 중 로구 자하문로	토지 화도면 동막리 **번지 외 **필지 *****.0000m ² 매매	7 기타	37,326,240	1,347,040	38,673,280
15	101501 취득세 (부동산)	28710-101501-202 605-2-340-000261	541024- 2*****	최*란	서울특별시 중 로구 자하문로 33다길	토지 화도면 동막리 *0*번지 외 *필지 *****.0000m ² 매매	7 기타	18,663,120	668,160	19,331,280
16	101501 취득세 (부동산)	28710-101501-202 605-2-340-000267	541024- 2*****	최*란	서울특별시 중 로구 자하문로 33다길	토지 화도면 동막리 산 **번 지 *****.0000m ² 매매	7 기타	1,866,300	65,760	1,932,060
17	101501 취득세 (부동산)	28710-101501-202 607-2-250-000565	620811- 1*****	홍*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41번길	토지 강화읍 국화리 산 **_* 번지 ***.0000m ² 상속(미신고 분 직권과세)	7 기타	1,048,200	23,860	1,072,060
18	101501 취득세 (부동산)	28710-101501-202 605-2-330-000269	611128- 2*****	황*영	인천광역시 강 화군 길상면 동 검길	건물 길상면 동검리 **_*번지 건물 **.0000m ² 증축	7 기타	1,140,790	40,870	1,181,660